#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815 발의연월일: 2025. 3. 11.

발 의 자:정성호·민병덕·소병훈

천하람 • 이연희 • 주철현

김정호 • 박희승 • 윤후덕

임미애 · 김남희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제1항제12호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81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2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(같은 법 제142조의4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2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	제15조의2(결산보고서의 부속서		
류)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	류) ①		
입세출결산(기금의 수입지출결			
산은 제외한다)에는 다음 각			
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			
1. ~ 11의2. (생 략)	1. ~ 11의2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<u>1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2</u>		
	조의3에 따른 조세지출결산서		
	(같은 법 제142조의4에 따른		
	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사		
	<u>항을 포함한다)</u>		
<u>12.</u> (생 략)	<u>13.</u> (현행 제12호와 같음)	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		